

2026년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춘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2026년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1일

춘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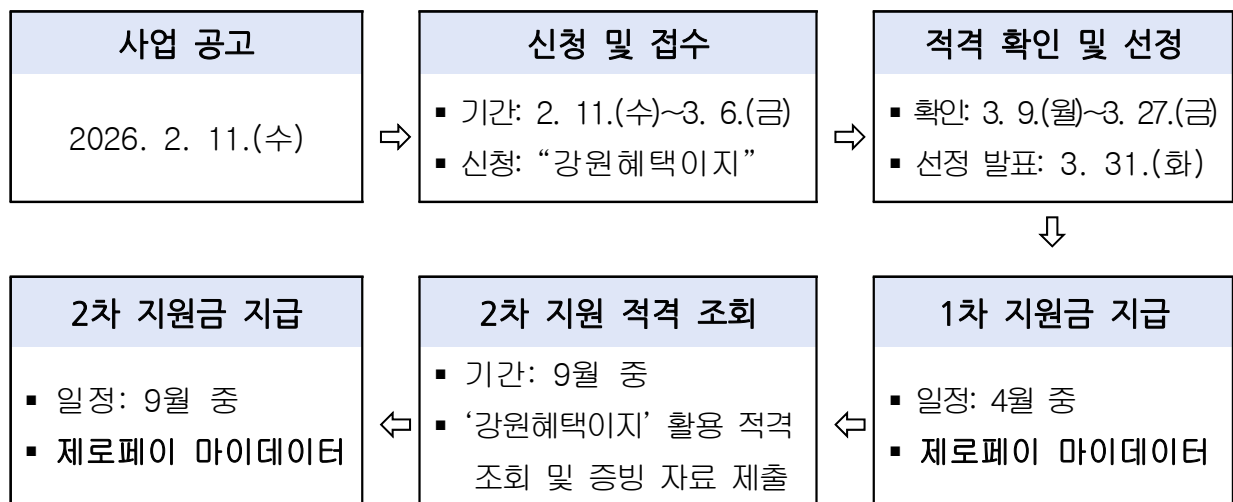
1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2. 11.(수) 09:00 ~ 3. 6.(금) 18:00
- (신청방법) 강원디지털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https://easy.gwd.go.kr>) 온라인 접수
 - ※ 신청 세부내용은 **3 | 신청 방법** 확인,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청년근로자 150명
- (지원내용)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 * 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지원용도)
 -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구입, 안경 구입, 헬스장 이용 등
 - (여가활동) 여행, 유원지 등 입장료, 공연 관람, 각종 문화행사 등
 - (자기계발) 학원 수강, 자격시험 응시,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
 -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 지원받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관외로 옮기는 경우
- 근무 중인 회사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근무처의 휴·폐업 시 3개월 이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 2개월 이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절차)



2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나이) 19세 ~ 45세 청년근로자 (※1981년 ~ 2007년 출생자 모두 해당)
- ② (주소) 공고일(2026. 2. 11.) 기준 춘천시 내 주민등록
- ③ (근무)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4. 1. 1.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동일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④ (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1인 기준 월소득 세전 3,333,509원*) 이하

* 소득은 신청 시의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20,883원 이하)

⑤ 아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종사자
 - 지원제외업종[붙임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종사자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에 속하는 기관·단체

3 신청 방법

- ①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② ‘혜택 서비스 찾기’ 페이지에서 「춘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③ 신청자격 확인 및 이용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확인 및 체크
 - 연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강보험료 부과액·납부액, 고용보험, 건강보험 취득일 및 상실 여부
- ④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가) ~ 라)’ 업로드
 - 가) 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동일직장 근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 나) 근무처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기준 춘천시 소재 확인)
 -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 11.~ 2026. 1. 납부액 확인)
 - 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
- ⑤ 신청서 제출 완료

< 첨부서류 발급방법 >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https://plus.gov.kr>) ⇒ 사업자등록증명 ⇒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24(<https://plus.gov.kr>)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발행신청연월(2025.11.~2026.1.) ⇒ 신청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연월(2025.11.~2026.1.) 조회 및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4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자 발표: 2026. 3. 31.(화) 예정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1차 복리후생지원금 지급 : 2026. 4월 중
- (지원내용)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0만원
- (지급방법) ‘제로페이 마이데이터’ 를 통한 PIN번호 문자 발송
⇒ 제휴 은행 및 앱 접속 후 PIN 번호 등록 사용
- 2차 복리후생지원금 심사 및 지급: 2026. 9월 중
- 선정자 5개월 후 자격 유지 여부 재확인 · 심사 후 잔여액(50만원) 지급

<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수령 전 사전절차(선정자) >

- 사업 신청시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상품권 PIN번호가 발송되며,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에 춘천사랑상품권 운영 앱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함
-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처에서 사용 가능
- 사용방법: 앱 실행→소비자가 가맹점 QR코드 촬영 후 금액입력 또는 가맹점이 간편결제업 QR코드를 리더기로 스캔→결제완료
- 가맹점 조회: 춘천사랑상품권 홈페이지
(https://ccgc.chuncheon.go.kr/site/franchise/search_list.do)
- 제외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유흥, 단란주점, 사행업소 등
- 지출제한: 제외업종 및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용 지출이 곤란한 비용

5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중단 또는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지급 선정자는 선정 후 주소지, 근무지, 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자격변동신고서(서식 4)**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의 복리후생지원금은 “제로페이 마이데이터”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중소기업 기준 1부.
 2. 지원제외 업종 1부.
 3. 이직 중 자격유지 인정 사유 1부.
 4. 신청서 서식 각 1부.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58212,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거주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붙임 4**신청서 서식****서식1****체크리스트(온라인 동의 사항)****신청 시 체크사항 안내** **자격요건 확인**

-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춘천시 주민등록자입니다. (예 / 아니요)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예 / 아니요)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서 2024. 1. 1.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동일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 아니요)
- 재직 중인 회사의 업종은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요)
- 기준 중위소득 13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20,883원) 이하입니다. (예 / 아니요)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요)

 지원사항 확인

- 복리후생지원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2회(각 50만원) 분할하여 지급되며, 2차 복리후생지원금은 1차 대상자 선정 후, 5개월 뒤 신청 당시 조건(거주지, 근무지) 유지 등 적격여부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자격변동 사항(주소, 연락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붙임 신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 후, 복리후생지원금(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에 춘천사랑상품권 운영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자격요건과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자격요건과 관련한 허위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지원금 부정 수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원금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